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260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9. 11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028	최재란 의원	'23.8.21.	상정 · 심사	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('23.9.11.)
서울특별시 전·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	1105	박영한 의원	'23.8.21.	상정 · 심사	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('23.9.11.)

-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(2023.09.11.)는 위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'전·월세종합지원센터'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·금융지원, 전세가격 상담,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

- 그러나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, 조례에 운영의 근거를 두어 해당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,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제1항 신설)
- 나.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규정함(안 제25조제2항 신설).

#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25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5장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

제25조(전·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
2.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·임대차상담 지원
3.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·주거지원 안내
4.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
5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
6. 지역별 전세가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제공
7.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5장 전 · 월세종합지원센터</u></p> <p><u>제25조(전 · 월세종합지원센터의</u> <u>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주택</u> <u>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</u> <u>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</u> <u>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</u> <u>기 위하여 전 · 월세종합지원센</u> <u>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</u> <u>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</u> <u>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</u> <u>조정위원회 운영</u></li> <li><u>2.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 · 임</u> <u>대차상담 지원</u></li> <li><u>3.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 · 주</u> <u>거지원 안내</u></li> <li><u>4.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주택</u> <u>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</u></li> <li><u>5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</u> <u>홍보자료 제작</u></li> <li><u>6. 지역별 전세가율 등 주택임</u> <u>대차 시장정보 모니터링 및</u> <u>분석결과 제공</u></li> </ol>

7.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 
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